

---

第10回서울特別市議會(定期會) 社會福祉委員會會議錄 第3號  
서울特別市議會事務處

---

日時 1992年12月21日(月) 午前11時

場所 社會福祉委員會會議室

---

議事日程

1. 서울特別市公設墓地,公設火葬場의管理및使用條例改正案例案
  2. 1992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審査된案件

1. 서울特別市公設墓地,公設火葬場의管理및使用條例改正案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 2面
  2. 1992年度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採擇의件 ... 29面
- 

(11時 12分 開議)

○委員長 車奉五; 시간이 조금 遲延되었습니다. 자리를 整頓해 주시기 바랍니다. 成員이 되었으므로 第10回 定期會 第3次 社會福祉委員會를 開議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존경하는 同僚委員 여러분, 保社局長님 이하 여러 關係公務員 여러분, 대단히 어려운 가운데 이렇게 많이 參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특별히 지난 18日은 우리 온 民族이 원하고 바라던 大選도 은혜 가운데에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다같이 協力해 주시고 오늘은 그 大選過程에서 여러 가지 참 열심으로 이렇게 奉仕하는 가운데 어려운 이러한 時間이지만 나와서 우리의 본연의 職務를 遂行하기 위해서 나오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가 새韓國 創造를 역시 創造하는 이러한 高貴한 뜻에 우리 社會福祉分野에도 뜻을 맞추어서 열심히 열심히 해야 할 그러한 때가 되었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특별히 지난 1年 동안 行政事務監査 또 지난 91年度의 歲入歲出決算에 대한 監査 또 93年度 歲入歲出豫算에 대한 여러 가지 審議를 하시느라고 무척 수고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특별히 本會議를 앞에 놓고 行政事務監査를 한 그 內容에 대해서 다시 한번 再檢討하고 確定해 주셔야 될 그러한 時間입니다. 그래서 本會議에 提出해서 今年를 마무리 짓는 이러한 會議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千萬市民을 代表해서 여러 同僚委員님들께서 평소에 느끼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集約해서 行政事務監査를 이렇게 모아다 냈습니다. 油印物에 역시 內容도 하나하나 準備를 했습니다. 深思熟考해서 오늘의 會議가 始終 千萬市民을 代表하는 귀한 이러한 社會福祉分野의 福利增進에 일익을 擔當하는 이러한 會議가 되어주실 것을 바라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1. 서울特別市公設墓地,公設火葬場의管理및使用條例改正條例案(서울特別市長 提出)

(11時 16分)

○委員長 車奉五;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公設墓地,公設火葬場의管理및使用條例改正條例案을 上程하겠습니다.

(議事棒 3打)

提案說明을 우리 執行部 되시는 許載九 局長 나오셔서 說明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존경하는 車奉五 委員長님, 그리고

委員 여러분, 평소 저희 所管業務 全 分野에 대하여 각별한 關心을 가져 주시고 激勵와 支援을 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희 局이 서울特別市議會에 提出한 서울特別市公設墓地 및 公設火葬場의管理및使用條例改正條例案의 審議를 要請함에 있어 그 推進背景과 主要內容을 報告드리겠습니다.

먼저 條例改正을 推進하게 된 背景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墓地 增加로 인한 國土毀損 우려가 增大되고 있으며 특히 墓地確保難으로 인한 市民不便要因의 增加 등으로 埋葬爲主로 葬墓慣行을 바꿀 必要性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保社部에 實施한 輿論調査에 의하면 火葬 後 納骨하거나 시한부묘지제도의 도입, 墓地面積의 縮小等を 贊成하는 傾向이 漸増하고 있으며, 今年에 開催된 墓地制度 改善 公聽會와 국제심포지엄에서 發表한 內容 또한 이를 적극 권장하는 政策을 建議하고 있습니다. 條例改正을 推進하게 된 주된 理由는 우리 市市立墓地在 만장되어 감에 따라 다양한 葬墓施設 設置 選擇範圍를 擴大함으로써 火葬後 遺骨을 安置하는 새로운 葬墓文化를 定着시키고 施設運營上의 赤字要因이 되고 있는 施設使用料를 일부 引上하여 赤字의 幅을 줄여나가기 위하여 條例改正案의 審議를 要請하게 되었습니다. 이어서 改正案의 主要骨子を 報告드리겠습니다.

市立墓地 火葬場 위주로 되어 있는 既存條例를 葬墓施設의 다양화에 따라 葬墓施設이라는 포괄적인 용어를 도입하며 制限된 墓地의 效率的 活用과 보다 많은 使用者에게 受惠가 돌아가도록 墓地의 使用面積을 縮小 調整하며 施設運營의 赤字要因이 되는使用料 等を 調整하고 無緣墳墓 發生을 豫防하기 위하여 3年마다 墳墓管理費 納付義務規定을 新設하며 現行

永久埋葬制를 期間別埋葬制 15年 단위로 變更하여 墓地의 再活用이 가능하도록 制度를 新設하며, 納骨堂의 利用率을 增大하기 위하여 遺骨安置期間을 現行 2年에서 15年으로 연장하고, 또 民間의 葬墓施設 設置를 誘導하기 위하여 市立公共法人에 한하여 葬墓施設管理運營權을 委託토록 되어 있는 것을 운영범위를 확대 非營利民間團體에도 委託可能토록 그 根據를 마련하며, 既存 墳墓는 이 條例施行 後 埋葬및墓地等에 관한法律의 規定에 따라 市長이 정한 일제 申告期間內에 다시 使用許可를 받도록 規定하여 無緣墳墓 把握을 위한 措置를 강구코자 합니다.

以上 報告드린 改正案은 1年 이상의 研究와 檢討를 거친 葬墓制度改善案으로서 새로운 葬墓文化定着이 可能하도록 委員 여러분께서 原案대로 通過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委員長 車奉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專門委員 나오셔서 檢討報告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專門委員 金南中; 專門委員 檢討報告 드리겠습니다. 다섯번째 項目 檢討意見만 간략하게 報告드리겠습니다.

서울特別市公設墓地公設火葬場의管理및使用條例改正條例案은 방치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한 狀況에 이른 墓地難과 우리의 葬墓慣習을 改善하기 위하여 시급한 改正必要性이 있는 條例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91年末현재 1,883萬餘基의 墳墓가 전 國토의 약0.9%에 해당되는 948km<sup>2</sup>에 달하고 있으며 每年 20餘萬基의 墓地가 늘어나 해마다 汝矣島 面積의 約 1.2배에 이르는 10km<sup>2</sup>의 國土가 墓地로 變하는 우려할만한 狀況에 처하여 있습니다. 특히 우리의 傳統 葬禮儀式이 埋葬中心이고, 葬禮에 관한 一般市民의 시각은 이런 심각한 추세를 인

정하고 무언가 改善을 해야한다는 막연한 생각은 가지고 있으나 본인 자신에게만은 해당이 되지 않으리라는 個人主義的인 思考方式이 건전한 葬墓文化의 定着에 障礙要因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火葬率은 1975년에 12.4%였었는데 그 이후 해마다 약간씩 增加하고 있었으나 91年 이후부터 다시 減少하는 경향이 있으며 外國의 火葬率과 비교하면 지나치게 낮은 狀態라고 생각합니다.

참고로 일본은 約 86%, 영국이 60%. 태국이 90% 등으로 火葬 이후 納骨堂에 안치하는 納骨墓地 制度가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 고유의 전통인 埋葬制를 改善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만 持續的인 弘報와 段階的이고 꾸준한 政策的 뒷받침, 그리고 社會指導階層의 勸諭 수범 등 綜合的인 對策이 必要하다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제 측면에서 볼 때 同條例改正案의 必要성과 妥當성이 인정됩니다. 細部檢討內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第6條 使用料 등의 條例案을 보시면 造成墓地 墳墓管理費의 納付가 每 3年으로 정하여 있으나 海外勤務, 軍服務 등으로 墳墓關係人이 불가피한 사유로 미납할수도 있으므로 이를 3年, 5年, 10年으로 세분하여 使用人이 처지에 맞게 選擇할 수 있도록 하여 管理費 納付體系를 다양화시킬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두번째, 第6條第3項第3號의 使用料減免條項 中 使用料를 納付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者는 해 가지고 使用料 減免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상 埋葬 및 墓地등에 관한 法律施行令 第11條에도 없는 事項이고 行政的인 자의성이 있는 애매한 條項으로 보여집니다.

세번째, 第7條 使用期間 再使用을 위한 延長期限이 使用期

間 終了日로부터 1年 以內로 되어 있어 民願發生의 素地가 있다고 보여지며 최소한 2年 이상으로 期限을 늘려서 民願發生 素地를 최소화시켜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네번째, 第17條 運營委託의 第2項에 보면 民間團體라고 되어 있습니다. 民間團體로 할 경우는 너무 포괄적이어서 管理主體 選定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보여지며 이를 非營利 民間法人으로 구체화시켜 責任 있는 管理主體 選定이 가능하도록 함이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별표2에 使用料가 나와 있습니다. 造成墓地가 2.8배 引上이 되었고 非造成墓地가 5배 引上이 되었고 墳墓管理費가 4萬 4,200원으로서 現行 條例는 1回納付로 써 영구히 지속되게 되어 있었는데 이것이 3년에 4萬 4,200원으로 그렇게 變更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火葬場 使用料도 平均 3.15배가 引上되었습니다. 한국기업연구원의 葬墓事業原價計算書를 參考하여도 지나치게 대폭 引上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向後 政策 檢討事項에 대해서 報告드리겠습니다. 葬墓設施의 명칭중 忘憂里, 內谷里, 碧蹄里, 龍尾里 第1,第2墓地로 되어 있는 것을 서울特別市立 第1墓地 第2墓地로 지명에서 순번식으로 變更하여 一般市民에게 신선감을 주고, 市立墓地에 서울을 빛낸 각계각층의 人事들을 우선적으로 安置하여 國立墓地처럼 영예스러운 전당으로 만들어 나가 는 것을 長期的으로 檢討되어야 한다고 보여집니다.

以上 檢討報告를 마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提案說明도 해 주셨고 檢討報告도 해 주셨습니다. 同僚委員님께서 그 內容에 대해서 質疑할 事項이 있으면 質疑와 答辯을 통해서 계속해

서 이것을 審議하도록 하겠습니다. 質疑하실 委員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卓炯春 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卓炯春 委員; 卓炯春입니다. 15年 동안 使用하고 다시 再契約 更新할 때 또 15年으로해 주는 겁니까?

○社會課長 蔡昇基; 네.

○卓炯春 委員; 다시 更新 15年 이후에는요? 30年하고 또 15年씩 계속할 수 있다 이거예요?

○社會課長 蔡昇基; 네.

○卓炯春 委員; 그래서 無緣故墓地는 어떻게 할거예요, 無緣故?

○社會課長 蔡昇基; 無緣故墓地는 저희가 調査해 가지고 合葬 또는 移葬하려고 그러합니다, 6月末에.

○卓炯春 委員; 合葬시키려고?

○社會課長 蔡昇基; 네, 한군데로.

○卓炯春 委員; 한 군데로 合葬을 하고, 無緣故墓는. 또 그리고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가서 更新 안하고 納骨堂에다가 安置를 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社會課長 蔡昇基; 그것은 나올 수 있죠.

○卓炯春 委員; 그런 데 대한 對備策은 없네.

○社會課長 蔡昇基; 納骨堂 安置도 可能해요. 지금 現在 墓인 데요, 그것을 다시 火葬해가지고 納骨堂 安置가 가능합니다.

○卓炯春 委員; 可能하게 條例에 되어 있어요?

○社會課長 蔡昇基; 네, 그렇습니다. 그것을 장려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卓炯春 委員;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그 納骨堂을 말이에요. 共同墓地 市立墓地에만 納骨堂을 둘 것이 아니라

教會나 寺刹, 聖堂 이런 데도 勸獎을 해서 納骨堂을 設置할 수 있도록 關係機關에, 내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는데.....

○社會課長 蔡昇基; 民間人이 委託運營.....

○卓炯春 委員; 委託運營?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아까 우리 專門委員님이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非營利法人天主教, 基督教도 墓地를 갖고 있습니다, 보니까.

○卓炯春 委員; 네, 墓地 가지고 있죠.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거기에도 納骨堂이라든지 이것을 하게 되면 우리가 勸獎을 하고.....

○卓炯春 委員; 그러니까 天主教라든지 教會에 私設墓地在 있는데 거기에다만 納骨堂을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市內의 聖堂이라든지 그 地下 이런 데를 納骨堂을 만들어 가지고 설치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런 데를 적극적으로 하도록 勸獎을 하고, 하도록 하고 여기서 支援을 하고 이렇게 되어야 된다.....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卓委員님 말씀은 이제 市內 都心部側도 可能하다 이런 얘기죠?

○卓炯春 委員; 네, 可能하게끔.....

○社會課長 蔡昇基; 場所制限은 안했습니다. 場所制限은 안했구요.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卓委員님, 이런 것은 우리가 조금 생각해 봐야죠. 教會라든지 寺刹에서 하면 市內에 되면 그 周邊에서 住民들이 어떻게 하나 이것을 우리가 이제 豫想해야 될 겁니다. 그것은 상당히 여러 가지 社會問題가 일어날 可能性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發展事項은 좋겠습니다. 한번 해 보고, 상당히 問題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推進하는 過程에서 發展시켜야 할 그런 事項 같습니다.

○卓炯春 委員; 좌우지간 왜냐 하면 사람이 父母라든지 무슨 친척이라든지 緣故가 있다고 하면 자기가 믿는 宗教機關에다가 納骨을 해 두는 것은 그런 대로 좀 마음의 위안이라든가 또 자기가 이렇게 내 시체를 영원히 우리 聖堂 어디다 保管 하도록 해라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자기가 믿는 宗教에 의해서 훨씬 더 그것 勸獎을하면, 그래서 꼭 墓地에 있는 부근에 있는 納骨堂만 勸獎할 것이 아니라 住宅街라 하지만 住宅街 聖堂 地下에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니까 큰 問題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勸誘도 하고 그런 民願이 周邊에 住宅地로 되어 있는 데는 反對를 해 가지고 안 된다 이런 것도 없이 가급적이면 勸獎을 해서.....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勸獎事項으로 이렇게.....

○卓炯春 委員; 墓地難이 심각하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 國土의 9%에 該當하는 墓地 이렇게 많이 잠식하고 있는데 이런 심각한 墓地難을 解決하기 위해서 그런 宗教 쪽에 委託을 해서 하는 方向이 훨씬 더 效果的이라고 봐요.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네, 그것 發展시켜 보겠습니다, 檢討事項으로 해 가지고.

○委員長 車奉五; 또 다음 柳光司 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柳光司 委員; 제가 말씀드리기 前에 방금 卓炯春 委員님이 이야기하신 대로 日本 같은데는 도쿄타워에서 죽 내려다보니까 밑에 좀 이상한 데가 있어서 저것이 무엇이냐고 가이드한테 물어봤더니 거기가 納骨堂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도쿄타워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아래 바로 거기에 納骨堂이 市内 한복판에 있더라고요. 그것은 다른 이야기고, 지금 여기 보면 火葬하는 데 大人은 1具當 1萬 5,000원이 나와 있습니다, 11

페이지에. 그리고 摘出物은 8,000원이 나와 있는데 우리가 大人 한 사람을 생각한다면 60kg을 잡게 되면 摘出物 10kg 당 8,000원인데 만약에 사람 1具로 쳐서 60kg을 잡으면 大人 한 사람 火葬하는 데 1만 5,000원인데 摘出物은 大人 1具 당 그것을 計算하면 60kg이면 4萬 8,000원이라는 숫자가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똑같은 1具를 60kg을 태우는데 사람은 1萬 5,000원이고 摘出物은 4萬 8,000원이면 조금 問題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委員님, 좀 앞서서 報告를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委員長 車奉五; 네, 앞서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柳光司 委員; 그런 문제도 있고, 또, 지금 우리가 政府에서 物價引上을 한 자리 숫자로 해라 하는 問題에서 이번에 여기에서는 우리 專門委員님이 말씀하신 대로 갑자기 墓地나 火葬에 대해서 너무 過한 引上이되지 않았느냐 이것을 指摘하고 싶고, 그 다음에 火葬場에서 이야기가 보면 상당히 여기에도 非理가 많이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가져가도 火葬을 잘 안해 주고 摘出物處理業者가 상당히 고통을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250kg만 火葬을 한다, 摘出物處理를 한다 해 놓고 만약에 여기 收去한 것은 한 300kg이나 400kg이 되면 받아주지를 않는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것을 다시 나머지는 갖다 놓고 또 썩어 냄새나도 뒷날 다시 가져와서 火葬을 하는 이런 非理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火葬을 하면 우리가 사람은 보통 午前에 다 火葬을 한단 말이죠. 그럼 午後가 되면 火葬 거기가 비어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그날 摘出量 정해 놓은 것

外에는 받아 주지를 앓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摘出物 業者들이 결국은 돈이나 한푼 주고 뭔가를 해 줘야 그 다음에 태워주지 안하면 안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심지어는 摘出物 處理業者가 나머지를 다음에는 가지고 서울시廳 앞에다 데모를 하겠다고 이렇게까지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處理問題도 좌우간 우리가 쓰레기를 收去하듯이 이것도 그날 收去한 것은 그날 태워줘야 되는 것이지 量을 정해 놓고 나머지 가져온 것 이것은 태울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다시 가져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래서 어쨌든간에 그날 나온 摘出物은 그날 處理를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 결국은 거기에서 그 사람들이 무슨 非理가 있어서 그런 것인지 이런 것도 앞으로 좀 상당히 調査를 해서 원만하게 處理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柳光司 委員님, 좋은指摘을 해 주셨는데요, 저도 保社局長으로 오기 前에 그런 말을 듣고 있고 또 言論에서도 報道가 되고 제가 과거에 課長 할 때 이미 그쪽에 한번 點檢調査를 해 봤습니다. 그런 事項이 있고 했는데 이것은 제가 責任을 지고 특별반을 編成을 해서 그 調査를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적절한 강력한 措置를 해서 그러한 非理가 없도록 해야 되고, 또 사람이 죽은 場所에 또 事後處理하는 過程, 그렇지 않아도 家族들이 참 슬퍼하고 하는데 이러한 問題가 있다고 그러면 이것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 제가 強力하게 調査를 해서 處理하고 그 의의 事項은 저희 課長이 答辯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實務課長님,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蔡昇基; 社會課長이 摘出物 價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摘出物 10kg當 現行

2,700원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저희가 이번에 8,000원으로  
인상을 시켰거든요. 그런데 거기의 경우 저희가 經濟企劃院  
等 물론 協議도 했습니다. 經濟企劃院에 協議도 했고 그런데  
自體에서 알아서 해라 하는 協議가 왔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8,000원 올린 것은 거기 보면 城南이 1萬원, 仁川이  
2萬 5,000원, 大邱가 5,500원 그렇습니다. 저희가 그 中에서  
너무 한 번에 많이 올릴 수없고 그래가지고 한 중간 정도씩  
해 가지고 仁川市만큼 처음에는 생각했다가 여러 가지 말씀  
도 계시고 그래서 8,000원으로 내려서 調整한 것입니다.

○柳光司 委員; 摘出物 處理業者 이야기는 하루에 한 300kg,  
시체 말고 摘出物만 하면 말이죠. 서울市內에서 300kg 정도  
인데 하루에 화장터에서 處理하는 것은 한 250kg 정도만 하  
고 나머지를 아마 處理를 안 해 주는 모양입니다: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그것 調査를 하겠습니까.

○柳光司 委員; 그러니까 하루에 나오는 것이 한 300kg 정도  
되는가 봐요.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오는 대로 다 받아 處理 해야지 그것  
안 받으면 됩니까?

○柳光司 委員; 글썄, 그것이 問題이지 않습니까?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그것은 제가 調査를 해 가지고 강력  
한 措置를 하겠습니까.

○委員長 車奉五; 네, 張柱昊 委員님.

○張柱昊 委員; 柳光司 委員님이 좋은 말씀 하셨습니다만 張  
柱昊 委員입니다. 지금 冠婚喪祭에 있어 가지고 法을 사실 惡  
用하는 경우가 禮式場이라든지 또는 火葬이 問題가 아니라  
영안실이라든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알고 계시는지 모르고  
계시는지, 알면 是正을 해야 되고 말이지. 그런데 안다, 是正

한다 하고 돌아보면 그 문제가 계속되는데 이제는 지쳐가고 거의가 慣例上 그렇게 되는 거다, 이렇게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데 좀 똑바로 法을 惡用하지 않도록 실지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保健社會局長 許戴九; 다시 제가 좀 調査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주 강력한 措置를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林承后 委員님 質問하시기 바랍니다.

○林承后 委員; 林承后 委員입니다. 柳光司 委員님 거기에 대해서 별표2에 의한다, 그런데 이 별표2가 바로 專門委員이指摘한 바와 같이 造成墓지가 2,800, 非造成墓지가 500, 墳墓管理費가 4萬 4,200원, 이것이 결국 韓國企業研究院의 葬墓事業 原價計算書를 參考로 해서 보면 지나치게 대폭 引上된 것이다, 이 條例는 營利目的이 아니고 市民의 便宜施策의 한 일환으로 본다면 이런 지나친 引上은 調整이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별표2를 한번 調整할 의향은 없으신지, 그것 한번 묻고 싶고요.

또 아까 卓炯春 委員 1年 期限 延長에 使用期間이 끝난 날로부터 1年 이내 이것도 잠깐指摘하신 것으로 아는데 1年 하면 지금은 國際化時代가 돼서 1年이라는 期限은 참 본의 아닌 그런 無緣故의 墓의 그런 結果를 초래하는 事項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 2年으로 改正을 해 놓으면 그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結果가 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것 第7條입니다, 使用期間. 그것 1年을 2年으로 고쳤으면 어떻겠느냐 하는 意見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한번 答辯해 주시고, 하나 더 非營利目的의 市民便宜 施策이다 그래서 第17條 運營委託에서 "民間團體에 委託할 수 있다"를 "非營利民間法人體에 委託할 수 있다", 局長님도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答辯하셨는데 아예 여

기 民間團體를 非營利民間法人體 이렇게 고쳐버렸으면 어떻겠느냐, 以上입니다.

○委員長 車奉五; 가만, 答辯을 듣고 또 質問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執行部 答辯 하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蔡昇基; 社會課長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原價問題는 87년에 정한 것인데 그 이후 한 번도 調整되지 않아서 지금우리 葬墓事業所가 저희가 年約 20억 支援하는데 歲入이 한 2億밖에 안 됩니다. 한 1/10밖에, 그래서 계속 赤字를 내고 있고요. 둘째는 아까 말씀드린 19페이지에 보면 他市·道하고 均衡이 너무 맞지가 않습니다. 가능하시면 單價調整은 이렇게 해 주시면 저희가 各市·道하고 한 1年間 研究한 것인데, 그러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使用 끝난 후 1年以內에 申告해야 될 것을 갖다가 2年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저희가 뭐냐 하면 無緣墳墓를 防止하려고 한 것인데 그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民間團體委託이라는 것은 또 앞으로 納骨堂 그것을 制度를 갖다가 擴張하면 하고자 하는 분들이 많을텐데 저희가 가능하면 施行規則에 이렇게 하도록 하면 어떨까 그런 意見입니다. 지금은 廣範圍하게 해놓고 獎勵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인데 施行規則에다 그것을 넣으면 어떨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卓炯春 委員; 納骨堂을 만드는 機關에 經濟的인 支援은.....

○社會課長 蔡昇基; 支援을 당분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卓炯春 委員; 施設費 같은 것을 支援을.....

○社會課長 蔡昇基; 처음에 收支가 안 맞을 경우는 支援을 一部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은요.

○卓炯春 委員; 支援을 해서 施設을 하도록.....

- 社會課長 蔡昇基; 네.
- 林承后 委員; 기왕에 非營利民間法人體라는 것을 施行規則에다 넣는다면 그것보다 上位法, 여기 條例에다가 넣는 것이 더 이상적이고 확실하지 않습니까?
- 社會課長 蔡昇基; 네, 그것은 그렇습니다.
- 林承后 委員; 그것을 왜 施行規則으로.....
-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民間團體보다도 모든 事業이라고 하면 法人體가 構成이 바로 되어야 되니까 法人體를 그리 넣어도 되지않을까.....
- 林承后 委員; 그렇죠. 그렇게 고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非營利團體로 보는 것이 團體라고 그러면 宗教團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네요.
- 卓炯春 委員; 네, 宗教團體. 꼭 法人만 하라는 것이 아니니까.....
-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林委員님, 그것도 우리가 생각해야 되겠네요, 宗教團體.
- 委員長 車奉五; 明示를 法人 및 宗教團體 이렇게 딱 明示해서 하는 方法도 方法이겠고.....
- 卓炯春 委員; 法人 및 團體 그렇게 하면.....
-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우선 法人 그래놓고 施行令에 가서 다 해라 하죠. 施行令에서 提議를 하겠습니다.
- 委員長 車奉五; 그러면 그 問題는 施行規則에 그것을 調整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은 李秉直 委員님.
- 李秉直 委員; 李秉直 委員입니다. 제가 한 서너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이 條例案이 通過되고 난 후에 어떻

게 弘報할 것인가 하는 弘報方法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고 두번째, 宗親會 및 그 家族單位, 家族에도 火葬을 誘導해야 되겠는데 그 誘導하는 데에 있어서는 방금 말씀 나왔듯이 支援에 대한 것이 있는데 支援이라는 것은

그 宗親會 山에다가 納骨堂 유치할 적에 하나의 許可節次問題, 쉽게 해야 되겠는데 그러한 問題가 있고 세번째, 遺骨團地를 돌로 이렇게 된 것이라든지 遺骨團地를 提供支援해 준 다든지 하는 그러한 支援方法에 대한 것을 생각해 보셨는지 네번째, 各 家族의 대개 宗親會가 있지 않습니까? 宗親會에 대한 宗中山이 있는데 宗中山이라든지 또는 家族의 어떠한 墓地 이것을 5代祖 이상은 火葬을 시킬 수 있는 條例案까지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지금 市立 이런것도 중요하지만 各 家族이 全國적으로 占有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데 무슨 말씀인가 理解 가지죠? 이 네 가지 方法을 答辯해 주십시오.

○委員長 車奉五; 네, 執行部 答辯해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蔡昇基; 社會課長 말씀드리겠습니다. 弘報方法은 첫째 저희 立場에서는 官報에 掲載하고 市報하고요. 그 다음에 매스컴에 弘報하고 가능하면 지금 管理事務所에 名單이 있으니까 埋葬하신 분들한테 個別的으로 通報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두번째 말씀하신 宗親會 家族에 대한 支援方法 같은 것은 저희가 아직 생각을 못해 봤는데 그것은 施行規則을, 하여간 根本精神은 당분간은 우리가 團體나 宗親會에 支援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施行規則 하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5代祖 이상은 墳墓를 없애는 方法을 생각해 봤느냐 하는데 지금 政府에서 그것을 굉장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그렇게 하려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 나이 많으신 분들의 생각이 그렇지 않

고 그래서 이것은 政府 次元에서 지금 많이 研究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金鍾源 委員님.

○金鍾源 委員; 金鍾源 委員입니다. 市立墓地管理의 條例는 國土의 效率的인 管理라는 그런 측면에서 原則적으로 贊成을 하고 또 앞으로 그런 쪽으로 改善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條例 資料를 보게 되면 條例를 일부 改正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全面的으로 改正하는 作業인데 왜 이렇게 全面的으로 改正을 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우선 質問을 드리고요.

두번째로는 第6條에 보게 되면 使用料減免規定에 "使用料를 納付할 能力이 없다고 인정되는 者는 使用料를 내지 않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居宅保護者는 既 지금 使用料를 받지 않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墓地管理에서 제가 듣기로는 조금의 不條理가 있다고 하는 얘기도 있는데 이러한 條項이 어떻게 보면 不條理를 조장하는 그런 쪽으로 악용될 素地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한번 質問을 드리봅니다.

세번째로는 第16條를 보게 되면 納骨堂에 遺骨 安置期間을 區分해 봤어요. 그리고 보면 無緣故 遺骨은 法施行規則 第5條第2項에 따라서 10年으로 區分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10年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이냐, 無緣故 遺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0年 이후에는 어떻게 處理할 것이냐 하는 부분을 제가 한번 質問을 드리고, 또 第17條를 보게 되면 "公共施設物의 管理를 專門으로하는 法人" 이렇게 범위를 規定해 봤습니다. 그러면 현재 管理를 專門하는 法人이 없다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앞으로 별도 法人을 設立하는 그런 어떤 規定인지, 그

런 어떤 計劃이 있으신지 그것도 質問을 드리고, 第21條를 보게 되면 委託取消規定 受託條件違反 이런 規定이 나와 있는데 受託條件違反이라는 그 內容이 뭐냐 하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 다음에 附則 第4條 보게 되면 造成墓地管理費徵收制度만 3年 후에 施行하는 그런 內容으로 되어 있어요. 다른 것은 전부 시행 날짜를 박아서 1月 1일이면 1月 1일부터 施行하도록 되어 있는데 附則 第4條만 지금 3年 後에 다시 施行을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 條項이 왜 3年後로 施行이 되어야 되는지, 그리고 지금 原價算出表를 보게 되면 自體原價 判斷額하고 또 用役 준 金額하고 상당한 差異가 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다고 그럴 적에 專門機關에서 算出した 根據 또 우리 自體에서 算出했던 根據의 差異, 이것이 상당히 差異가 나는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을 질문을 드리고 싶고, 지금 우리가 執行部에서 내놓은 案대로 이것이 施行이 된다고 그럴 적에 赤字幅은 어느 정도 되느냐, 92年度는 지금 어느 정도 우리가 歲出이 되어 있고 歲入이 얼마고, 이것이 施行이 이렇게 바뀌었을 때에 歲出과 歲入의 差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러니까 赤字幅이 어느 정도 줄어드느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李秉直 委員이 質問하셨던 內容과 조금 重複이 됩니다만 弘報를 우리가 제대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것이 이제 10년이 지나가지고 또는 3年, 3年 두번 지나가지고 緣故者 再申告者가 없게 되면 이제 納骨堂이나 또는 納骨墓地에 갔다가 다시 安置한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렇게 되면 內容을 모르고서 서울에 살면서 內容 몰라가지고 자기 祖上의 墓를 잊어버리는 그런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이

弘報方法이 官報 정도 해 가지고는 안 되지 않느냐, 이것을 대대적으로 日刊紙新聞에 弘報를 해서 全 市民들이 그 內容을 알 수 있도록 해 줄 必要가 있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專門委員이 指摘했던 事項인데 지금 市立墓地는 거의가 지금 현재로 보면 零細한 우리 市民들이 使用을 한다고 보아집니다. 조금 돈 있는 분들은 자기 墓地를 가지고 家族墓地를 가지고 使用합니다만 庶民들이 주로 使用하는 곳이 市立墓地라고 보여지는데 이 市立墓地를 제대로 管理해서 서울市民, 좀 돈 있는 사람도 또 名譽 있는 사람도, 地位 있는 사람도 그 墓地를 使用해서 이 墓地가 실지 서울市民 누구나 다 들어가기를 원하는 그런 쪽으로 管理할 그런 用意는 없으신지 質問을 드립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執行部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蔡昇基; 社會課長 말씀드리겠습니다. 金鍾源 委員님께서 말씀하신 첫째, 國土의 效率的 利用이 問題인데 全面改正理由가 뭐냐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例가 87年 이후 한 번도 고치지 않았고 그 동안에 저희가 墓地를 管理해 오면서 公團墓地 一般墓地 이렇게 나누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納骨堂墓地가 생기기 때문에 全體的으로 現代化에 맞게 文句를 좀 맞추고 그리고 用語도 現代化에 맞게 포괄적으로 規定했기 때문에 改正을 했습니다.

그리고 두번째, 使用料 納付能力이 없는 者는 공무원의 不正의 素地가 없겠냐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生活保護者한테는 免除가 되고 그 다음에 其他納付能力이 없는 者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상당히 엄격한 基準

을 施行規則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遺骨安置期間이 無緣故는 10年인데 그 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 그 後에는 合葬을 하겠습니다.

○金鍾源 委員; 여러 遺骨을 合葬한다, 合葬해서 갖다 한 곳에 갖다 奉安한다 그런 얘기입니까?

○社會課長 蔡昇基;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碑石 세우고 대충 몇 基라는 것 써 놓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公共施設의 管理를 專門化하는 法人이 지금 현재 없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이 規定을 만들면서 새로 양성을 하겠습니다.

○金鍾源 委員; 法人 設立을 별도로 한다는 얘기에요?

○社會課長 蔡昇基; 네, 양성을.

○卓炯春 委員; 나중에 緣故가 생겨가지고 다시 찾아갈 수 있게끔 그런 制度는 안 됩니까?

○金鍾源 委員; 合葬해 놓으면 찾아갈 수 있나, 못 찾아가는 거지.

○康明秀 委員; 아니, 그러니까 合葬을 하더라도 어떻게 火葬을 해서 이름별로 따로 만들어서 혹시 나중에 緣故가 생겨서 자기先祖 祖上遺骨 달라 이럴 경우 어떤 解決方法이 좀 있어야죠.

○社會課長 蔡昇基; 그것이 技術的으로 不可能할 겁니다, 技術的으로. 지금 龍尾里에 가면 예를 들어서 무슨 무슨 地區 土地區劃事業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저희들이 그 緣故가 나오기까지 誠實하게 反對는 몇 차례 하겠습니다. 몇 차례 하고 해 가지고 뭐 그렇게하는 것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말씀.....

○社會課長 蔡昇基; 또 계속 드리겠습니다. 受託業者가 規定

을 違反하는 경우는 施行規則에 만들어 가지고 內容을 確實하게 明文化 해 놓겠습니다. 그리고 單價差異 하면서 이 條例案대로 통과될 경우 歲入을 얼마나 보느냐, 저희가 될 경우 1年間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葬墓事業所에 25억원을 支援해 주면서 年間 歲入은 2.5억원이다 1/10이다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할 경우는 約 17億원이 될 것 같습니다, 歲入이 17억원, 그러면.....

○金鍾源 委員; 赤字幅은 많이 주네요?

○社會課長 蔡昇基; 네, 赤字幅이 한 15억원 더 歲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弘報問題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個別通知하고 新聞에 대대적으로 弘報하겠습니다. 그리고 市立墓地에는 주로 零細民이 쓴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아까 우리 內容에 造成墓地进行해 가지고 그것은 約 2坪 정도 造成을 해 가지고 많은 市民이 利用하도록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그러면 우리 尹基聖 委員님.

○尹基聖 委員; 尹基聖입니다. 同僚委員들께서 다 좋은 말씀하셨는데 또 제 나름대로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서 묻고자 합니다. 市立墓地로서는 제일 오래된 墓地在 제가 알기로는 忘憂里墓地로 알고 있습니다. 그 외에 龍尾里 이렇게 해서 지금 포화상태로 있는데 물론 執行部에서도 다 잘 아시고 계시겠지만 우리 忘憂里 같은 경우에는 지금 無緣故墓地在 사실 많다고 認定이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니까 그 됩니까? 풀 베는 벌초, 벌초하는 時期에 보면 풀을 안 베는 墓地는 전부 다 無緣故墓地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그때 그때가 봐도 每年 벌초를 하지 아니하고 항상 묵은 墓로 이렇게 放置가 되어 있는데 이러한 墓地는 좀 아마 緣故를 찾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모르거니와 아마 墓地管理所에 가면 記錄이

잘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墓地는 좀 과감하게, 가뜩이나 지금 墓地가 모자란 狀態인데 좀 處理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것을 좀 指摘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묻고 싶은 것은 조금 전에 卓委員님도 그러한 말씀을 하셨습시다만 既 條例를 고친다고 한다면 地域은 장소는 분명히 어디는 안 되고 어디는 된다고 딱 條例를 해 놓아야지 場所의 指摘이 없으면 굉장히 어려움이 山積해 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納骨堂의 場所는 어디 어디는 안 되고 어디 어디는 안 된다고만 꼭 指摘을 해 두고 싶은 생각이 저의 所信입니다.

以上입니다.

○委員長 車奉五; 執行部 答辯 주시기 바랍니다.

○社會課長 蔡昇基; 社會課長 말씀드리겠습니다. 忘憂墓地의 경우 예를 드신건데요, 너무 無緣故墓地가 많을 것이다, 그것을 어떻게 對策을 樹立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시다. 저희가 지금 推測하기로는 해마다 忘憂里墓地에 省墓客이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推測은 한 1/3정도가 無緣墓가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來年에 일제 申告를 한번 받으려고 그러합니다. 일제 申告 調査를 해 가지고 그것을 한번 參考資料로 삼으려고, 그래서 일제 申告를 來年에 받겠습니다.

두번째, 納骨堂은 아무 데나 許容해서는 안 되고 場所를 指定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現在 지금 法律에 보면 納骨堂은 寺院, 墓地, 火葬場, 其他 엄숙한 場所에 設置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規定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康明秀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康明秀 委員; 康明秀 委員입니다. 이 條例案 第20條에 보면 指導 監督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公設墓地나 公設火葬場에 그 동안 非理的인 事項들이 간간이 그 동안 많이 어떤 輿論을 통해서 들려 왔었는데 그 동안 여기에 대한 어떤 指導 監督한 結果 어떤 事例들이 있을 거예요. 어떤 어떤 非理들이 있었다 하는 그런 事例들이 있을텐데 그 指導 監督했던 그러한 實績에서 이런 事例들이 있으면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앞으로 이러한 非理들을 척결할 수 있는 어떤 앞으로의 計劃은 어떤 것들인지, 本委員의 생각으로는 거기에 使用者의 어떤 非理申告函이라든지, 어떤 問題點을 우리 市 指導 監督하는 그 官廳에 어떤 申告가 되는 그런 망을 어떻게 만들면 좀더 根源的인 거기 어떤 非理 척결할 수 있는 方法도 있을텐데 이러한 計劃을 좀 말씀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受託者는 지금 施設管理公團에 이제 지금 受託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施設管理公團이 상당히 제가 보기에 官僚化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使用者들에게 좀 불친절하고 어떤 경직되어 있는 그런 運營들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그 使用者들에게 좀더 친절하게 運營할 수 있는 어떤 方案은 무엇인지, 꼭 施設管理公團이 어떤 官僚化되어 있어서 그 使用者들에게 불친절하다고 하면, 그것을 고칠 수가 없다고 하면 그 受託者를 어떻게 좀 非營利法人이라든지 다른 法人으로 바꾸어서라도 使用者들이 좀더 편안한 마음으로 利用할 수 있는 그런 方案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委員님 좋은 指摘을 해 주셨는데 墓地事務所, 또 그 周邊이라든지, 우리가 火葬場이라든지 이런 데는 住民申告函을 設置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定期的

으로 分析을 해서 하고 또 施設管理公團이 官僚化되어 있는 것은 제가 다시 敎育을 시키겠습니다. 그래서 보다 친절하게 이렇게 管理를 잘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外 社會課長이 좀 答辯해 주세요.

○社會課長 蔡昇基; 事例 말씀하셨는데 今年5月 저희가 監査를 해 가지고 施設管理公團管理所長이 拘束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火葬場內에는 非理監督그것을 監視카메라라고 그러나요? 그것을 設置해 가지고 職員과 所長이 수시 出納하는데 이렇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前에는 常住하는 승려가 있어가지고 승려가 거기서 행패를 좀 부려 가지고 그것이 굉장히 民願이 되었었는데 그 승려를 追放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새로운 所長이오고 또 職員을 대폭 交替해 가지고 많이 改善하려고 努力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계속 敎育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施設管理公團에서 하는 것보다 다른 데 委託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저희가 먼것번에 이런 事故가 생겨가지고 한번 民間人한테 委託줘 볼까, 經營을요. 그 생각도 해 봤었는데 오히려 不條理가 더 심할 것 같아서 그것은 일단 施設管理公團에다가 더 맡겨 보자 그런 結論이 났습니다. 그래서 몇 年間 더 시켜 보고요, 그 다음에 또 안 될 경우 交替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敎育 시키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卓炯春 委員님 質疑하시기바랍니다.

○卓炯春 委員; 지금 우리 葬墓施設에 관한 條例, 소위 墓地 問題를 擔當하는 社會課하고 말이에요 우리 福祉局에서 하는 葬儀事業, 거기는 家庭福祉局所관이죠? 이것이 業務가 聯關이 된 것 아닙니까, 이것이? 葬儀業務하고 이것이 많지 않은 聯關된 業務인데 이것 좀 效率的으로 지금 한 곳으로 모을 수

없습니까?

○社會課長 蔡昇基; 원래 他 市·道나 保社部는 家庭福祉局에서 합니다. 그런데 서울시에는 昨年에 家庭福祉局에서 하다가 그 쪽 형편이 어려워 가지고 保社局으로 넘어왔습니다.

○卓炯春 委員; 아니, 그러니까 영안실 葬儀業務도 家庭福祉局에서 社會課로 넘어왔으면.....

○社會課長 蔡昇基; 家庭福祉局所管인데요, 전부. 他 市·道나 保社部도. 그런데 그것이 저희 서울시의 형편이 좀 달라 가지고 저희한테 墓葬關係가 넘어 왔습니다. 墓地하고 埋葬關係만.

○卓炯春 委員; 埋葬 墓地만 이쪽으로 넘어오고 葬儀 行爲 이런 것은 지금 家庭福祉局所管이란 말이에요. 그것이 一貫性 있게 政策의 그런 면 때문에 한 곳에서 管理를 하는 것이, 이 業務를 家庭福祉局에 넘긴다든지 家庭福祉局에서 社會課로 葬儀 行爲에 대한 그것도 넘긴다든지, 一元化 시켜가지고 해야지 더 效率的이지 않겠느냐, 그리고 그 前에도 家庭福祉局에 그런 얘기를 했는데 너무 영안실 糞포가 심하지 않습니까, 病院은 한정돼 있고. 그래서 그것을 지금 建設部에 住居地域은 소위 屍體安置室을 設置할수 없다 이렇게 되어 있는가 본데 그것을 좀 緩和를 시켜가지고 聖堂이나 寺刹에서도 영안실을 設置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으면 이것이 좀 緩和가 돼 가지고 그래서 좀 많은 것을 독점해 가지고 하면 이런 폐단이 없을 것이다, 집에서 지금 葬禮를 치르지 않습니까, 집에서, 지금 아파트에서도 치르고. 그런 것을 準用을 해 가지고 聖堂이나 敎會에 住居地라고 하지만 그런 데서도 屍體室만 만들어서 病院屍體室이 아닙니까, 영안실이라는 것이. 敎會에서도 좀 만들어 놓고, 거기서 葬禮 치를 수 있게끔 制

度的으로 뒷받침을 해 주고 위에 建議를 해라 이거예요. 왜 綜合病院만 영안실을 두어 가지고 횡포를 부리게 만들지 말고.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지금 우리 卓委員님 말씀하신 것은 建設部에 지금 立法豫告中이라고 그러니까, 住居專用地域만 除外해서. 그렇게 하는데 제가 一線 그 區廳長할 때 한 가지 事例를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강병원이라는 데가 있어가지고 거기가 옛날에 지어져서 屍體室이 한 두 군데 있고 그 외에 그러한 일이 있으면 옆에 인근 中大附屬病院의 屍體室을 이렇게 좀 活用하고 이렇게 했는데 오래 되고 煖房이라든지 施設을 좀 現代化하기 위해서 增·改築을 하는 단계에서 屍體室을 冷凍室을 하나 더하려고 地下室에 이렇게 했는데 아주 어려움이 거기 있습니다. 住民들이 그것 어떻게 알고 왜 當初에 2個인데 하나를 더 하느냐, 그쪽 아파트쪽은 안 보입니다. 그래가지고 결국 當初 2個대로 하고 그것도 病院하고 저쪽 入住者하고 覺書쓰고 公證까지하고 이렇게 한 事項입니다. 그것은 점차적으로 우리가 意識이 조금 조금 變化되면서 그리고 이것 立法豫告中이니깐요 이것이 立法이 되고 이러면 좀 달라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發展시켜 나갈 그러한 事項이라고 봅니다.

○卓炯春 委員; 住居地域에서도 屍體室을 設置할 수 있게끔 立法豫告中입니까?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住居專用地域만 안되고, 점차적으로 立法이 되면 다를 겁니다.

○委員長 車奉五; 역시 그 問題는 立法豫告狀態이니까 結末을 봐서 이렇게 하는 方向으로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李秉直 委員님, 質疑하시기 바랍니다.

○李秉直 委員; 社會課長님 말이죠, 一般家族에서 納骨堂을 設置할 경우에 이것이 내가 생각할 적에 山林毀損法에 저촉 되는지, 山林毀損이. 두번째로는 建築物 許可를 得해야되는지, 이것 한번 알아보신 적이 있는지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 이런 것이 앞으로 老人課가 빨리 新設되면 여기에서 주로 할 것이 많은데 老人, 우리 市 保社局內에 老人課, 그런데 그것이 그 前부터 계속 말이 있었는데 그것 아직 新設 안 하는 理由는 局長님이 의욕이 없으십니까? 경고한번 받으셔야지 일을 하시렵니까?

○保健社會局長 許載九; 그 局 關係課, 老人福祉課 얘기죠? 老人福祉課, 그것 아주 좋은 말씀하셨는데 지금 우리가 年齡層이 상당히 늘어나고 해서 우리가 老人福祉年金 같은 것도 지금 쥐야 되는데 그것은 아주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建議를 해서 保社部에서 老人福祉課, 老人問題만 專擔하는 그런 課 單位가 있어야 되겠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家庭福祉局하고 같이 議論을 하겠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金鍾源 委員님, 質問하시기 바랍니다.

○金鍾源 委員; 金鍾源입니다. 墓地問題는 지금 좁은 國土에서 앞으로 계속 使用해야 되는 그런 問題 때문에 상당히 重要性을 要하는 問題라서 우리가 오랫동안 충분한 質疑를 한 것 같습니다. 또 이 市立墓地條例는 어떻게 보면 우리 庶民들한테 상당한 負擔을 주는 그런 條項이 많이 있는 것도 같습니다. 지금 앞으로 15年 以後에는 다시 또 申告를 해야 되는 그러한 번거로운 節次도있고 또 3年마다 申告해서 使用料를 내야되는 그런 負擔을 주는 條項이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을 기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執行部에서 1年 동안 檢討를 해서 충분한 資料를 提示해 주셨고, 또 오

늘 오랫동안 質疑 應答을 했습니다. 물론 조금 미진한 部分이 없잖아 있습니다만 그 미진한 部分은 施行細則을 충분히 檢討하셔서 이로 인해서 被害를 보는 우리 市民들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특히나 아까 우리 社會課長님 말씀하셨습니다만 新聞에 대대적인 公告를 해서 몰라서 被害를 보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資料를 보게 되면 引上率이 상당히 높습니다만 이것은 引上했던 期間이 상당히 오래되었고 또 隣近의 다른 地域에 비해서는 그래도 많은 額數가 아닌것 같아서 執行部에서 提出하신 原案대로 通過할 것을 動議합니다.

○委員長 車奉五; 네, 林承后 委員님 말씀해주십시오.

○林承后 委員; 第7條 使用期間에서 "使用期間을 延長하고자 할 때는 使用期間이 끝난 날로부터 1年 以內에 다시 使用許可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이로 인해서 1年으로 해서 民願의 發生素地가 많기 때문에 이것만은 2年 以內로 이렇게 修正할 것을 提案합니다.

○委員長 車奉五; 좋습니다. 第7條第2項 使用期間 1年을 갖다 2年으로 하자 하는, 그러한 調整해서 이렇게 받자는 修正인데 同意해 주셔서 하시면 되는 것이니까 同意해 주셔도 충분히 理解가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괜찮겠죠?

(「네」 하는 委員 있음)

그러면 動議를 받아들이니까 1年을 第7條 第2項에 1年 使用을 2年으로 이렇게 修正해서 받자는 動議에 재청이 있습니다. 異議없으시면 以上으로 質疑와 答辯을 全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議事日程 第1項 서울特別市公設墓地,公設火葬場의管理및使用條例改正條例案을 1年을 2年으로 修正해서 通過시키려고 하는데 異議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서울特別市長이 提出한 公設墓地,公設火葬場의管理 및使用條例改正條例案을 通過한 것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서울특별시공설묘지,공설 화장장의관리및사용조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  
○委員長 車奉五; 수고하셨습니다. 保社局長님 이하 關係公務員, 이제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 2. 1992年度社會福祉委員會所管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採擇의件

(12時 15分)

○委員長 車奉五; 다음은 議事日程 第2項 1992年度 社會福祉委員會所管 行政事務監査結果報告書 採擇의 件을 上程합니다.

(議事棒 3打)

監査結果報告書는 地方自治法 第36條 및 同法施行令 第18條에 의거 議長에게 提出하여 本會議에 報告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 行政監査를 여러 가지 모양으로 審議를 終結한 바 있습니다. 그것을 綜合해서 整理를 했습니다. 油印物을 參考해 주시고 오늘 전체를 採擇해 주시기 바랍니다.

○李秉直 委員; 이런 것을 미리 보내 주지.....

○委員長 車奉五; 내용을 제가 조금 檢討해봤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동안 行政事務監査期間 동안에 質疑 答辯한 내용이 要約해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별로 차질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니다. 우리 그 동안 行政事務監査 때 역시 質疑 答辯한 要約한 內容을 여기에 한 것이니까 잘 檢討해서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 하면 이제 本會議에 천상 이것을 上程해야今年 마무리가 됩니다. 하니까 이제 運營委에 回附해서 運營委에서 일괄적으로 本會議에 上程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林承后 委員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林承后 委員; 여기에 하나 追加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어린이집의 保育料에서 低所得層의 어린이들에게 保育料를 支援하는 制度가 있습니다. 그 低所得層의 基準이 月所得 60萬원이라는 上限線을 정해 놔는데 이 60萬원은 低所得層의 基準으로 보기에 너무 합당치가 않다는 사실을 本委員이 指摘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더 넓게 폭넓게 低所得層이 어린이집을 이 施設을 利用할 수 있도록 그 한계선을 좀더 올려서 引上을 시켜서 60萬원을 그 위를 좀 올려서 더 많은 低所得層이 利用할 수 있도록 하는 그것을 여기에 넣었으면 싶습니다.

○委員長 車奉五; 그 問題는 行政事務監査 때에 우리가 質疑하고 答辯하고 執行部 意見을 들어봐서 綜合해서 決定되어야지 여기에서는 안 됩니다. 이 案은 우리 行政事務監査 때 質疑 答辯을 해서 거기에서 確定해 주겠다 하고 약속된 事項을 綜合해서나온 것이기 때문에.....

○林承后 委員; 아니, 檢討하겠다고 했는데.....

○委員長 車奉五; 그런데 글썄, 그 執行部の 意見을 듣지 않고는 여기에서 마음대로 이렇게, 그러니까 그것은 다음 회기에 또 이렇게 機會가 있으리라고 믿고 일단.....

○金鍾源 委員;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지금 우리가 行政監査를 해 가지고 執行部에서 檢討하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에 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가 지금 뭘하고 있는 것이예요.

○林承后 委員; 檢討를 하라는 것이지, 하기로 했으면.

○委員長 車奉五; 그러면 執行都를 좀 오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시 執行部의 意見을 들어봐 가지고 그래서 확실하게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專門委員 金南中;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結果報告書는 地方自治法上에 委員會에서 만들어 가지고 委員長의 名義로 本會議에 報告해서 採擇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專門委員室에서 委員님들 말씀하신 것을 전부 취합을 해서 그것을 5페이지에 보면 所管別 監查事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所管別 監查事項이라고 해 가지고 委員님들 말씀하신 內容을 전부 要約을 해 놨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맨 뒤에 보면 다른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是正 및 處理 要求事項인데 이것은 會議당시에 執行部에서 是正하겠다 또는 處理를 하겠다 하는 答辯을 받은 事項만 또 추려낸 것입니다. 아까 林承后 委員님 말씀하신 內容에 대해서는 포괄적으로 12페이지에 보면 兒童 保育政策의 長·短期計劃 樹立이라는 內容에 一般的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렇게 아주 세부적인 事項은 저희들이 그것을 안하고 개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林承后 委員; 좋습니다.

○康明秀 委員; 그러니까 이것이 方法上에서 우리가 行政事務 監查를 한 結果決算報告書인데 적어도 이것을 하루 이틀 전이라도 우리가 檢討를 해서 여기 안 들어간 것은 더 삼십시키고 또 여기 報告書 나온 것에 問題 있는 것은 또 좀 빼고 해서 오늘 이 자리에서 그것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자

리에 덜렁 갖다 놓고 오늘 會議 있는데 이것을 檢討해서 하려면 자꾸 形式的인 그런 會議밖에 안 된단 말이죠. 이런 意識이 빨리 고쳐져야지 이것 마냥 여기 와서 그냥 會議 때 덤석 내 놓고 거기서 通過시키시오 하는 이런 식의 意識은 빨리 고쳐져야 된다고, 方法을 고쳐야 된단 말이죠. 그것을 지금 指摘하는 거예요.

○委員長 車奉五; 옳은 말씀을 指摘을 해주셨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方法은 지양을 해 주시고 미리 이 資料를 해서 委員님들께 配付해서 檢討할 수 있는 時間의 여유를 주어서 이렇게 本會議에 여기에서 될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 아무래도 이번 會期는 本會議가 23日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이 21日입니다. 도저히 이제 다시 모여서 할 그러한 期間이 없기 때문에 조금 그런 점이 있습니다만 理解해 주시고 深思熟考해서 採擇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金鍾源 委員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金鍾源 委員; 우리 다 專門委員님이 전에 우리 委員들한테 監查報告資料를 提出해 달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있었습니다. 우리가 듣긴 들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지금 바쁜 狀況이다 보니까 미처 아마 그 資料들을 내시지 못한 것 같고 사실상 저도 이것 오늘 처음 이 자리에서 資料를 보니까 조금 우리 會議 때 얘기되었던 內容과 다른 그런 內容도 없잖아 사실은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追加했으면 하는 그런 事項도 있는데 우리가 23日 本會議에 通過해야 되는 問題이기 때문에 지금 時期的으로 상당히 촉박합니다. 이것을 다시 돌아가셔서 檢討해서 다시 취합한다는 얘기는 現實적으로 어려우니까 이번 問題는 原案대로 通過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車奉五; 감사합니다. 그러면.....

○李秉直 委員; 저기 保健社會局의 醫藥課를 分離하고 老人福祉課인가 新設하는 얘기를 나도 얘기하고 우리 林委員도 적어 준 것 같은데.....

○金鍾源 委員; 그 말씀하셨어요. 저도 들었는데 우리가 또 2월, 3월에 다시 常任委員會 할 것이니까 그 때 강하게 얘기해서 그것은 다시 한 번 하도록 하고.....

○李秉直 委員; 保社의 醫藥課長님이라든지 이 사람들이 자꾸 요리조리 빠지는 것 같아서.....

(議案擔當官室 李覺來 제가 기억이 있는데 說明을 드릴까요?)

○李秉直 委員; 네.

(議案擔當官室 李覺來 그 때 保社局長님 答辯이 本會議에서 崔明鎭 議員님께서 指摘을 하셔서 가지고 지금 企劃管理室에서 市政開發組織管理를 市政開發擔當官室에서 합니다, 서울시의 課라든가 職制를. 그래서 그 때 市政開發擔當官室을 비롯해서 企劃室에서 檢討를 하고 있다고 그 때 答辯을 하신 것을 들었습니다, 제가.)

○金鍾源 委員;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은 각 委員님들한테 받아 가지고 專門委員이 檢討를 해서 委員님들한테 팩스로 넣어 쥐가지고 한번 檢討할 수 있는 時間 여유를 줬더라면 좋았는데 그렇지 못했는데 지금 이것 다시 檢討하자니 사실상 時間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만은 그냥 原案通過를 하고 그리고 다음 미진했던 部分은 다음 常委적에 우리가 또 檢討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委員長 車奉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以上으로 1992年度 社會福祉委員會所管 行政事務監查結果報告書를 採擇하고자 하는데 異議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委員 있음)  
없으시면 採擇된 것을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  
(參照)  
199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뒤에 실음)

.....  
○委員長 車奉五; 長時間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日程은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고 今年 壬申年 해에  
모든 우리 社會福祉委員會의 우리 會議 業務는 오늘 사실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제 癸酉年을 맞이해서 더욱 힘찬 보람  
있는 새해를 맞이하는 契機가 되어 주실 것을 바라고 오늘  
日程을 全部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散會를 宣言합니다.  
(議事棒 3打)  
(12時 26分 散會)

- 
- 出席委員  
車奉五 金鍾源 李秉直  
張柱昊 李仙姬 朴光勳  
金演洙 林承后 柳光司  
康明秀 尹基聖 卓炯春
- 專門委員  
金南中
- 出席公務員  
保健社會局  
局長 許載九

社會課長 蔡昇基